

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

제정 2012. 10. 18 조례 제2425호
일부개정 2015. 1. 8 조례 제2589호
일부개정 2015. 6. 24 조례 제2636호
일부개정 2017. 1. 5 조례 제2792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6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16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안양종합운동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축구발전과 시민여가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을 설립하고 시민축구단의 육성·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 1. 8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안양시민프로축구단(이하 “시민축구단”이라 한다)”이란 안양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를 연고로 둔 지역의 시민, 단체,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시민축구단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시민축구단의 설립 지원에 관하여는 「민법」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 <개정 2015. 6. 24>

제4조(시민축구단 육성) ① 안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·단체 등에게 지원을 권장하는 등 시민축구단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. 8>

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. 8>

1. 시민축구단 창단 및 지원사업
2. 시민축구단 관계 자료의 수집·관리 및 보급과 조사연구
3. 지역축구발전을 위한 각종 협회 및 단체 지원
4. 엘리트 유소년축구단 운영
5. 그 밖의 시민축구단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

③ 시장은 안양종합운동장 및 부대시설을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제5조(법인설립) 시민축구단 지원을 위하여 「민법」에 따라 시민축구단 재단법인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[전문개정 2015. 6. 24]

제5조의2(정관)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
4. 자본금 또는 출연금
5. 임직원에 관한 사항
6. 이사회 의 운영
7.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
8. 예산과 회계
9. 정관의 변경
10. 해산에 관한 사항
11. 사채의 발행
12. 공고의 방법
13.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
14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5. 6. 24]

제6조(예산지원 등) 시민축구단의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,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되, 시 출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. 8>

제7조(수익사업)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8조(회계연도)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.

제9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10조(보고·검사·감사) ① 시장 및 의회가 시민축구단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·검사·감사·조사를 요청할 경우에 재단은 이에 응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

6. 24>

1.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
2. 임직원의 채용,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3. 임금, 성과급,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재산의 취득·처분 등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

제11조(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)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예산의 경과조치) ① 이 조례에 따른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.

③ 삭제 <2017. 1. 5>

부칙 <2015. 1. 8 조례 제258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 6. 24 조례 제263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1. 5 조례 제279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